

관리번호
10-3

중·고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

사업구분	계속	사업주체	영양군	부서장	김태겸(☎6031)
완료시기	임기내	추진부서	자치행정과 (총무팀)	팀 장	김수근(☎6910)
사업성격	예산	협조부서	-	담당자	배상기(☎6912)

<공 약 목 표>

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
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에 기여

□ 근거법령

-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 및 제27조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
- 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
-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3. ~ (매년)
- 사 업 비 : 2022년 54백만원 ⇒ 2023년 72백만원 확대(군비 72)
- 사업규모
 - 기존 : 180명 대상 교복 구입비 30만원 한도 내 지원
 - 확대 : 180명 대상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40만원 한도 내 지원
- 사업대상
 - 교복을 입는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
 - ※ 현재 조례 기준 사업 대상은 신청 당시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나, 2022년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 확대 예정
 - 관내 초·중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신청 당시 영양군에 있는 학생

□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계	임기내						임기후
		소계	2022	2023	2024	2025	2026	
계	414	342	54	72	72	72	72	72
국 비	0	-	-	-	-	-	-	-
도 비	0	-	-	-	-	-	-	-
군 비	414	342	54	72	72	72	72	72
기 타	0	-	-	-	-	-	-	-

□ 재원확보 방안

- 2023년 ~ : 본예산 편성(군비)

□ 연도별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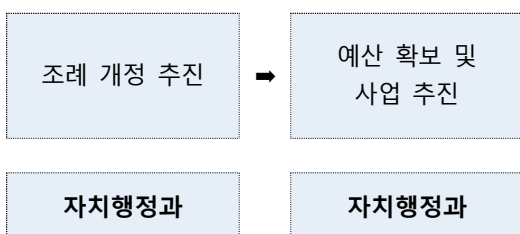
구 분	2022	2023	2024	2025	2026	임기후
계 획	조례 개정	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	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	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	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	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
진도율 (%)	50	100	100	100	100	100

□ 사전 검토사항

- 관련 법령 및 계획사항

법령(계획)명	검토기준	현 황	저촉여부	비 고
초·중등교육법 제 60조의4, 같은법 시행령 제 104조의2	-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여부	- 교육비 지원대상	부	
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	- 체육복 구입비 지원 가능 여부	- 조례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례개정 추진	부	

□ 추진절차



□ 추진현황 및 계획

- '22. 09. : 사업 범위(교복구입비 외 체육복 구입비 지원)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
- '23. 03. ~ : 사업 추진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해당없음

검토 의견	
담당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존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생활복 및 체육복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○ 기존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○ 2022년 하반기 내 조례개정 완료 및 23년도 사업 추진을 통해 공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총괄부서 (기획예산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추진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○ 재원 역시 자체재원을 부담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